

『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
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체납된 사용료 가산금 “ 100분의 5”를 “ 100분의 3”으로 하향
- 원인자부담금 증가산금 대상금액 “ 100천원”을 “ 300천원”으로 상향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30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변화와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
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시민생활에 실질
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,
- 주요내용으로는
 - 체납된 사용료의 가산금 “ 100분의 5”를 “ 100분의 3”으로 하향
 - 원인자부담금 증가산금 대상금액 “ 100천원”을 “ 300천원”으로 상향
조정하는 내용으로,
소액체납자 즉, 300천원미만 체납자의 증가산금 폐지에 따른
체납세 증가가 우려됨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
사료됨.
-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
것으로 판단됨.